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강릉시의회의장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책무 (안 제3조)
- 다.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관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